



# IT서비스 용역 사업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 IT서비스 용역 사업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 발 간 사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입니다.

우리는 여러 계약서 상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또는 ‘...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물의 창작 기여도, 소유권과 저작권 등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이러한 표현은 ‘저작권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와 관련한 연구 위탁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활용이 많은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저작권의 권리 귀속에 관한 명확한 구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저작권 공정사용과 침해예방에 앞장서고자 ‘IT서비스 용역 사업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IT서비스 개발 절차에 따른 저작물 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저작물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구매, 창작 등의 권리 유형별 관리표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의 안내를 통해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 용역 사업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에 집중하고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호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저작권의 공정사용과 침해예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 태 용

용어정리 ..... 4

## 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5  
 2.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 6  
 3. 가이드라인의 기대 효과 ..... 6

## 2장 IT서비스 개발 절차와 저작권

1. IT서비스 개발 절차와 저작물 관리 5단계 프로세스 ..... 7  
 2. 단계별 저작물 세부관리 방법 ..... 8

## 3장 IT서비스 기업의 저작물 관리 방법

1.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9  
 2-1.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11  
 2-2.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13  
 3. 도구로 활용된 SW저작물 관리표 ..... 15  
 4. 공유 저작물 관리표 ..... 17  
 5. 오픈소스 SW 관리표 ..... 19

## [별첨자료]

별첨 1. 저작물 분류표 ..... 22  
 별첨 2-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 23  
 별첨 2-2.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 24  
 별첨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25  
 별첨 4.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29  
 별첨 5. 주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 30

## 용어정리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용어는 IT서비스 용역사업자들의(공급자 및 발주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법령용어를 준용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저작권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외

### 공급자

용역 사업 계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의 저작물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자

### 발주자

공급자를 대상으로 IT서비스 등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는 자

### 계약목적물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IT서비스사업<sup>1)</sup>)의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의 저작물)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 유지관리

개발·구축된 IT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 기능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1) 해당 정의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이하의 정의를 IT서비스산업협회가 IT서비스산업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음을 명시함

# 1장 가이드라인 개요

##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1) IT서비스 산업 내 저작권 환경

- 용역 프로젝트 수·발주(형) 사업은 계약 시 저작권 관련 세부내용이 기술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지식재산권을 '계약목적물(정보시스템 등)'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프로젝트 진행 및 납품과정에서 명확히 기술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로만 기재되어 있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세부계약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개발 및 창작과 2차적저작물 권리귀속에 따른 정당한 비용 산정에 애로 사항이 존재함.
- '공동 소유' 및 '균등한 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실제로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다툼의 소지를 내포함.

### 2) 저작물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IT서비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활용이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서 저작물의 창작, 개발, 도입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저작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종 산출물 납품 시 명확한 인도와 계약이행 점검이 필요함**
- 발주자의 경우, 최종 결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기업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함(저작물 관리표 필수).

## 2.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1) 대상 : IT서비스 용역 사업 발주자 및 공급자

2) 적용범위 : IT서비스 중 저작권 영역

① IT서비스 용역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구축·개발·제작하는 경우

② 기존의 SW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①, ②번 외 IT컨설팅(ISP 등), 단순 장비운영 및 납품사업은 제외

3) 적용방법

발주자의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 3장의 저작물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사업 중 관리해야 하는 저작물 대장을 만들고 납품 시 「완료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

## 3. 가이드라인의 기대 효과

1) 계약 대상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확보

2) IT서비스산업 전반에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3) 발주자와 공급자를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으로부터 보호

4) IT서비스 산업 내 활용되는 개별저작물을 명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전체 IT서비스산업 발전 기대

5) IT서비스 산업 내 개발사 및 개발자들의 기여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찾음으로서 개발자의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 도모

6) 기업의 지적재산권 자산화의 기반자료로 활용





## 2. 단계별 저작물 세부관리 방법

### 1) 1단계 : (발주자) 저작물 관리 요청 단계

- ① 발주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진행 전(全) 단계에서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을 요청한다.
- ② 「사업추진 내용」 중 필수 저작물 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저작물 이용 또는 구매 금액을 예산에 포함시킨다.  
\* 기능 요구사항(SFR), 성능 요구사항(PER), 보안 요구사항(SER)<sup>2)</sup> 등 작성 시 필요 저작물이 있는 경우 기재
- ③ 사업 수행 시 저작물을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 완료 시 저작물 관리표를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2) 2단계 : (공급자) 저작물 관리 계획 제안 단계

- ① 발주자의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기반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 시 저작물 관리 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 ② 투입 인력 중 저작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시한다.

### 3) 3단계 : (공급자) 저작물 관리 및 납품 계획 작성 단계

- ① 공급자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필요 저작물 수급 계획서(자체 제작, 구매, 오픈소스 활용 등)를 작성한다.
- ② 실제 사업 수행 시 수급 저작물과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 4) 4단계 : (공급자) 저작물 관리표 작성 단계

- ① 분석이 끝나고 설계 단계에 이르면 저작물 관리표를 본격적으로 작성한다.
- ② 이후 구현 단계에서 실제로 제작, 구매, 활용된 저작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5) 5단계 : (발주자·공급자) 저작물 관리표 작성 완료 및 제출 단계

- ① (공급자) 테스트 단계에서 사업완료 단계를 거쳐 저작물 관리표 작성을 완료한다.
- ② (공급자) 인수 테스트와 완료 검사를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최종 저작물 관리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 ③ (발주자) 완료보고서 검토 시 저작물 관리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sup>3)</sup>

2)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SER, Security Requirement

3) 발주자는 저작물 관리표 내용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 3장 IT서비스 기업의 저작물 관리 방법

- IT서비스는 저작권 개념으로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저작물 집합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원저작물들을 수정·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다.
- 따라서, IT서비스 사업 전반에서 저작물의 점검·관리를 위해 '저작물 관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급자(창작자)의 저작물을 구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본 저작물 관리 가이드라인은 6종의 <저작물 관리표>로 구성되어 있다.
  1.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2-1.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2-2.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3. 『도구로 활용된 SW저작물 관리표』
  4. 『공유 저작물 관리표』
  5. 『오픈소스 SW 관리표』
- 3장에서 각각의 정의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1.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1)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정의

- 공급자가 구매한 **납품용 구매 저작물(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기록한 표
- \* 단 공급자가 자체 개발한 SW 등 저작물은 제외한다
- \*\*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일반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 2)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계약목적물에 구매된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및 방법 가.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표-1>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①제품명	ti245a13801	Oracle 11g
②저작물 분류	이미지	소프트웨어
③권리자	통로이미지(주)	Orac**
④라이선스조건 <sup>4)</sup>	웹/모바일(APP)사용	정부·공공기관용
⑤라이선스번호(취득번호/사용번호)	ti245a13801	doc-20180430
⑥라이선스기간	영구	2020.4.30. (계약 후 2년)
⑦기타		

\* 3장 모든 표의 색깔표시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임

#### 나. 『구매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제품명 : 공급자가 납품을 위해 구매한 저작물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예) 오라클
- ② 저작물 분류 : 구매한 제품의 저작물 종류를 기재한다. <별첨1>의 저작물 분류표를 참조할 수 있다.  
예) 소프트웨어
- ③ 권리자 : 제품의 권리자(권리사)를 기재한다.  
예) Oracle Corporation
- ④ 라이선스 조건 : 구매하여 납품하는 제품의 라이선스 조건(발주자 기준)을 기재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을 위한 대리 구매이기 때문에 계약목적물과 함께 사용 가능한 조건일 것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시 기재한다.
- ⑤ 라이선스 번호(취득번호/사용번호) :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 번호(또는 취득번호나 공급자 관리/사용번호)를 기재한다. 관련 번호가 별도로 없을 시 구매를 확인할

4) 정부·공공기관용/교육용/기업용 또는 클라우드서비스용/모바일용/컨버팅서비스용 등으로 기재 가능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거나, 구매 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⑥ 기간 :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을 기재한다.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영구'로 기재한다.
- ⑦ 기타 :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 2-1.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1)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정의

- 공급자가 직접 창작·개발한 저작물을 기록한 표

### 2)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및 방법

#### 가.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표-2>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①제품명	MES** EAI v.3.5
②코드번호	00CC7D2F
③저작물 분류	프로그램 저작물
④창작자	메타**(주)
⑤창작일	2013.09.16
⑥권리자/사	메타**(주)
⑦이용 조건	복제·배포·변형 등 금지 단, 유지보수 시 활용 허용
⑧차적저작물 코드	18EA*7D2*
⑨기타	

## 나. 『자체개발 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제품명 : 공급자가 납품을 위해 자체 제작·개발한 저작물의 제품(또는 저작물명)을 기재한다.
- ② 코드번호 : 제품에 코드번호나 시리얼넘버(S/N) 또는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곤란한 경우는 뒤 4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예) XXXX-XXXX-XXXX-1234로 기재
- ③ 저작물 분류 : 자체 제작·개발한 제품의 저작물 종류를 기재한다. <별첨1>의 저작물 분류표를 참조할 수 있다.  
예) ○○○소스코드
- ④ 창작자 : 제품(저작물)의 창작자를 기재한다. 업무상저작물<sup>5)</sup>일 경우, 회사명을 기재할 수 있다.
- ⑤ 창작일 : 창작일을 기재한다. 공표일이나 배포일 중 기재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⑥ 권리자 : 제품(저작물)의 권리자를 기재한다. 창작자와 권리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작자는 개발사에서 고용한 외부인이더라도 권리가 공급자에 있으면 공급자명을 기재한다.
- ⑦ 이용조건 : 발주자의 이용조건을 의미한다. 발주자 입장에서 납품 받아 이용할 때의 조건을 기재한다.  
예) 최종 계약목적물과 함께 영구 사용 가능, 복제·전송·배포 등은 금지
- ⑧ 2차적저작물 코드 : 공급자가 자체개발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일 경우에만, 코드를 부여하고 다음 <표 - 3>에서 원저작물 요소를 명시한다.
- ⑨ 기타 :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5)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31호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2-2.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 1)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정의

- 공급자가 직접 창작·개발한 저작물 중 다른 저작물과 함께 변형·각색되어 재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기록한 표

### 2)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2차적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및 방법

#### 가.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양식

<표-3>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①2차적 저작물명	②2차적 저작물 코드	③요소저작물(원저작물)				⑧기타
		④제품명	⑤코드번호	⑥권리자/사	⑦계약서 (취득확인)	
a	b	c				
		d				
		e				
MES** EAI v.3.5	18EA*7D2*	**행정정보 화사업 _DB Adaptor	42273PR	****부	【별첨2】 참조	
		##체계_FT P Adaptor	R209324	#####공단	【별첨3】 참조	
		@@서비스 _Protocol Adaptor	22**-57-aP rDFe	@@@공사	【별첨4】 참조	

## 나. 『자체개발 2차적저작물 관리표(납품용)』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2차적저작물명 : 2차적저작물명을 기재한다. <표-2>에서 2차적저작물 코드가 있는 제품명과 일치한다.
- ② 2차적저작물 코드 : <표-2>에서 ㉔2차적저작물코드와 일치한다.
- ③ 요소저작물(원저작물) : 요소저작물은 2차적저작물 창작의 바탕이 되는 원저작물을 말한다. 하나의 2차적저작물이 하나의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나의 2차적저작물로 재창작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표-3>에서 2차적저작물 ㉔는 ㉑+㉒+㉓ 3개의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여 만들어진 경우이다.
- ④ 제품명 : 요소가 된 원저작물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 ⑤ 코드번호 : 제품에 코드번호나 시리얼넘버(S/N) 또는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곤란한 경우는 뒤 4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예) XXXX-XXXX-XXXX-1234로 기재
- ⑥ 권리자 : 요소가 된 원저작물의 권리자를 기재한다.
- ⑦ 계약서(취득확인) :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 가능하도록 이용을 허락받은 계약서나 권리 취득확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계약서 등의 첨부로 같음할 수 있다.
- ⑧ 기타 : 기타 원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 범위 한정이나 제한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3.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 1)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정의

- 공급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기록한 표

예) 홈페이지 개발 시 이미지 편집을 위해 사용된 포토샵 라이선스

#### 2)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공급자가 도구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작성양식 및 방법

##### 가.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작성양식

<표-4>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①제품명	(폰트)THE홍차왕자_소녀	PhotoshopCS6	HU2016TTF
②코드번호	cm220131	dCsd-2383-D4fd-****	sdlkg***
③권리자/사	통로이미지(주)	Adobe®	HEUMM DESIGN
④권리기간	영구	매년 갱신	계약기간
⑤활용분야	웹디자인	이미지편집	문서제작용
⑥기타	해당 웹페이지 내에 한함		Basic Installation License (Web Embedding Only)

##### 나. 『도구로 활용된 SW저작권 관리표』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제품명 : 공급자가 SW나 시스템 제작을 위해 활용한 SW저작권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SW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정품 어도비포토샵 프로그램을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어도비포토샵’으로 기재한다.

- ② 코드번호 : 제품에 코드번호나 시리얼넘버(S/N) 또는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곤란한 경우는 뒤 4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예) XXXX-XXXX-XXXX-1234로 기재

- ③ 권리자 : 위에 기재한 저작물(제품)의 권리자(권리사)를 기재한다. 어도비포토샵의 경우 권리자는 'Adobe사'가 된다.
- ④ 권리기간 : 공급자가 권리자로부터 부여받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 기간을 기재한다. '어도비포토샵'의 경우 라이선스 기간 및 유형을 기재하면 된다.
- ⑤ 활용분야 : SW저작물이 활용(이용)된 분야를 기재한다.  
예) '이미지 편집', '폰트 적용' 등
- ⑥ 기타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 4. 『공유 저작물 관리표』

### 1) 『공유 저작물 관리표』 정의

- 공급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기 위해 사용된 **공유 저작물**을 기록한 표

### 2) 『공유 저작물 관리표』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공급자가 사용한 공유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공유 저작물 관리표』 작성양식 및 방법

#### 가. 『공유 저작물 관리표』 작성양식

<표-5> 『공유 저작물 관리표』

①저작물명	2016 토요일명품공연: 국립국악원무용단 ‘궁의 하루’[03.12.] - 02. 왕과 왕비의 춤 ‘태평무’	긴 여행의 시작
②저작물 분류	영상저작물	문서저작물
③권리자/사	국립국악원 장악과	김**
④적용 라이선스	KOGL 제1유형	CC BY-SA
⑤출처	국립국악원	<a href="http://blog.naver.com/###">http://blog.naver.com/###</a>
⑥기타		

#### 나. 『공유 저작물 관리표』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저작물명 : 공유 저작물의 명칭을 기재한다.

\* 공유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CCL)<sup>6)</sup>,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sup>7)</sup>을 의미한다.

6)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

7)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② 저작물 분류 : 공유 저작물의 종류를 기재한다. <별첨1>의 저작물 분류표를 참조한다.
- ③ 권리자 : 공유 저작물의 권리자(기관 등)가 있는 경우 권리자를 기재한다.
- ④ 적용 라이선스 : 해당 공유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기재한다. 공유 저작물 라이선스는 <별첨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과 <별첨5> ‘CCL’을 참조한다.
- ⑤ 출처 : 공유 저작물의 출처를 기재한다. 온라인에서 입수한 경우에는 URL을, 오프라인 상 입수한 경우에는 기관명, 상호명 등을 기재한다.
- ⑥ 기타 :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있는 곳

- **공공누리 (<http://www.kog1.or.kr/open.do>)**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검색 서비스

공공저작물 관련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 02-3153-2874)

## 5. 『오픈소스 SW 관리표』

### 1) 『오픈소스 SW 관리표』 정의

- 공급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기 위해 사용된 오픈소스 SW의 정보를 기록한 표
- \* 공급자가 SW나 시스템을 납품할 때 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

### 2) 『오픈소스 SW 관리표』 용도

-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때, 공급자가 사용한 오픈소스 SW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

### 3) 『오픈소스 SW 관리표』 작성양식 및 방법

#### 가. 『오픈소스 SW 관리표』 작성양식

<표-6> 『오픈소스 SW 관리표』

①구분	대 표	구 성
②프로젝트명/파일명	SW	start_min_library.js
③라이선스 이름	Apache License	GNU General Public License
④라이선스 버전	2.0	2.0
⑤파일경로	/bin	/util
⑥출처	http://	http://
⑦개작여부	무	유
⑧개작날짜		18.2.5
⑨공개범위	없음	전체
⑩충돌여부	호환	충돌
⑪기타		

#### 나. 『오픈소스 SW 관리표』 작성방법 및 용어

##### ① 구분

- 대표 라이선스인지 구성 라이선스인지를 나타낸다.
- 대표 라이선스는 상용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모두 가능하지만 오직

하나의 라이선스만 가능하다.

- 구성 라이선스는 상용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모두 가능하며, 여러 라이선스도 가능하다.

② 프로젝트명/파일명

- 프로젝트에 수정된 파일이 존재할 경우 수정된 파일만 ‘파일명’으로 하단에 별도 표기한다.
- 구분이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파일명으로 제품명을 사용한다.
- ‘구성’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오픈소스 SW 프로젝트 이름이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오픈소스 SW일 경우에는 제품명과 커뮤니티 이름이 동일할 수 있다.

③ 라이선스 이름

- 상용 라이선스 또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일 경우에는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발표한 작명 표준을 사용한다.

예) GPL = GNU General Public License

④ 버전

- 라이선스의 일련번호로써 ‘N.n’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 여기서 ‘N’은 주요 버전 번호(major version number)이고 ‘n’은 비주요 버전 번호(minor version number)’이다.

⑤ 파일경로

- 파일 시스템에서 최상위 디렉터리(또는 폴더)로부터 해당 파일에 이르기까지 주소 체계이다.
- ‘대표’로 구분된 경우에는 파일 경로는 항상 최상위 경로인 ‘/’가 된다.

⑥ 출처

- 해당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오픈소스 SW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 주소가 된다.
- 상용 제품과 같이 저장매체를 통해서 전달 받는 경우 공급하는 회사 이름을 기재한다.

## ⑦ 개작 여부

- 해당 파일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유’, ‘무’로 기재한다.

## ⑧ 개작 일자

- 해당 파일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를 연월일 형식으로 기재한다.

## ⑨ 공개 범위

- 해당 라이선스에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있을 경우에 그 범위를 기재한다.

예) GPL은 소프트웨어 전체, EPL은 모듈, MPL은 파일에 해당된다.

## ⑩ 충돌 여부

- 소프트웨어에 연관된 모든 라이선스 사이의 충돌 여부를 ‘충돌’ 또는 ‘호환’으로 기재한다.
- 첫 번째 충돌 조건은 대표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사이의 충돌로, 예를 들어, 상용 라이선스와 GPL 계열의 라이선스 사이의 충돌을 말한다.
- 두 번째 충돌 조건은 구성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사이의 충돌로, 예를 들어, GPL 계열의 라이선스와 MPL 사이의 충돌이 있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https://olis.or.kr/>)**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제공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보 및 자료 제공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련 문의처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 055-792-0135)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상담게시판

## [ 별첨자료 ]

### [ 별첨 1 ]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②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③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④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⑤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⑥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⑦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⑧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⑨ 프로그램저작물	원시 프로그램(소스코드), 목적 프로그램(오브젝트코드), OS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시험용 프로그램 등
⑩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진단, 데이터베이스 등
⑪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 별첨 2-1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사용자 라이선스	1인 1PC 라이선스	가장 일반적인 PC기반의 라이선스
	동시 사용 라이선스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이용범위(국가, 본사, 지사)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라이선스로 PC수나 사용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동일 제품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하는 가장 흔한 업그레이드 방식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경쟁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다
	언어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추가적인 언어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최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
	기술보증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임박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현행 버전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공급형태별 라이선스	패키지 라이선스	CD 매체와 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포장된 제품
	중소규모 볼륨 라이선스	사용자가 등록되는 라이선스로 설치를 위한 매체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5User 이상 구매 시 가능한 라이선스
	대규모 볼륨 라이선스	수백 대 이상의 대규모 PC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라이선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나이상의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보유, 제공,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공급업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제한에 따른 라이선스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있음
	번들 소프트웨어	다른 기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해당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OEM 방식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생산 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비용은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소프트웨어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 [ 별첨 2-2 ]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허용 기간에 따른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기간 라이선스	일정 기간 사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해 사용하도록 허용
	임시 라이선스	비용 정산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위해 임시로 발급되거나, 국제회의 등 행사를 위해 단기간 동안 임대 하는 방식
사용기준에 따른 라이선스	1인 1PC 라이선스	가장 일반적인 PC기반의 라이선스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사이트 라이선스	이용범위(국가, 본사, 지사)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라이선스로 PC수나 사용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프로세서 라이선스	하드웨어(서버)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 라이선스
	서버접속 라이선스(CAL)	Client Access License로 장치당 라이선스(Device CAL)와 사용자당 라이선스(User CAL)가 있다

### [ 별첨 3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p>[제1유형: 출처 표시]</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 4. 공공누리 이용조건

- 가. 공공기관 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 다.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 3.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4. (제1유형과 동일)

##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1.~4. (제1유형과 동일)

## [ 별첨 4 ]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b>저작자 표시</b> (Attribution; BY)	<p>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p>
 <b>비영리</b> (Noncommercial; NC)	<p>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b>변경금지</b> (No Derivative Works; ND)	<p>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p>
 <b>동일조건 변경허락</b> (Share-alike; SA)	<p>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p>

## [ 별첨 5 ] 주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 1) 주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특징 비교

라이선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	BSD	Apache 2.0	GPL 2.0	GPL 3.0	LGPL 2.1	MPL	CDDL	CPL/ELP
복제·배포·수정의 권한 부여	○	○	○	○	○	○	○	○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	○	○	○	○	○	○
저작권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	○	○	○	○	○	○	○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	○			○	○	○	○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	○	○	○	○	○	○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부여		○		○		○	○	○
라이선수가 특허 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		○		○	○	○
이름/상표/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	○				○	○	
보증의 부인	○	○	○	○	○	○	○	○
책임의 제한	○	○	○	○	○	○	○	○

① derivative work

② work based on the program

③ derivative work

④ file

⑤ file

⑥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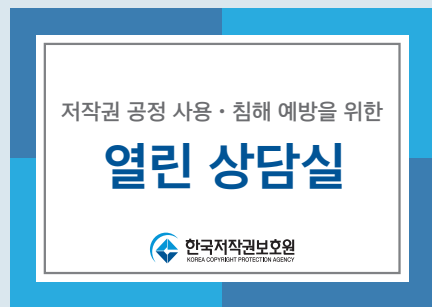
### 2) 주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내용	무료 이용가능	배포 허용가능	소스코드 취득가능	소스코드 수정가능	2차적저작물 제공개 의무	독점SW와 결합가능
GPL		○	○	○	○	○	X
LGPL		○	○	○	○	○	○
MPL		○	○	○	○	○	○
BSD license		○	○	○	○	X	○
Apache license		○	○	○	○	X	○



#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OK란?

정품콘텐츠를 유통·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OK'로 지정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

## 상담분야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 신청방법

- 저작권OK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이메일 · 팩스 접수
- 저작권OK 홈페이지  
[www.copyrightok.kr](http://www.copyrightok.kr)  
대표 이메일 : [c-ok@kcpa.or.kr](mailto:c-ok@kcpa.or.kr)  
팩스번호 : 02-3153-2719
- 문의전화 : 02-3153-2737, 2744

## 상담방법

- 전화 : 1588-0190  
(침해예방을 위한 상담 컨설팅 : "0"번 선택)
- 대면 :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열린상담실  
※ 대면 상담의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을 부탁  
드립니다.
- 온라인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내 저작권 상담코너

## IT서비스 영역사업자를 위한 저작물 관리 가이드라인

발행월 2018년 9월  
발행인 윤태용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9/10층  
집필진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대오, 이우도, 김선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이수영  
감수 이효석, 하홍열  
문의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1588-0190)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www.kcopa.or.kr>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http://www.itsa.or.kr>  
저작권OK <http://www.copyrightok.kr>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9/10층  
 T. 1588-0190 F. 02-3153-2709 H. [www.kcopa.or.kr](http://www.kcopa.or.kr)